

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주요 질문답변[FAQ]

- 본신청, 자동신청, 지급수단 관련 -

2025. 2.

2025학년도 ‘교육급여 바우처’ 신청 및 사용 관련

주요 변경 사항 사전 안내를 위함

(기타 내용은 2024년 기 배포된 FAQ 참고)



교육부

17개 시·도 교육청



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FAQ

< 2025학년도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관련: 1 ~ 7번 >

1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? ★

☞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(학생) 본인 또는 보호자*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교육급여 신청인(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),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

2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?

☞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☑ 기존 수급 가정(학생)도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.

(단,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·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로 지원받은 경우 2025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 (☞ 자동신청 관련 [질문 14~18] 참고))

3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?

☞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'25.4.1.(화)부터 '26.2.28.(토)까지 약 11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.

아울러, 현재 접수 중인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.6.30.(월)까지이오니, 아직 신청하지 않은 수급 가정에서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☞ 기존 수급 가정(학생) 및 신규 수급 가정(학생) 모두 신청 가능하며, 신청기간 동안에는 공휴일·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.

· (2025학년도 바우처) 2025. 4. 01.(화) ~ 2026. 2. 28.(토), 09:00 ~ 22:00

· (2024학년도 바우처) 2024. 4. 01.(월) ~ 2025. 6. 30.(월), 09:00 ~ 22:00

4

2025학년도 바우처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?

☞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정보는 매달 16일~ 23일경 교육청에서 재단으로 송부합니다. 해당 기간에 확인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그 다음달 1일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5

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후에 카드에 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☞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가능한 신청권자이며, 신청 시 선택한 신용·체크카드사의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2~5영업일 내에 바우처가 배정됩니다.(전용카드는 카드 배송 및 수령 등에 따라 10일 내외 소요 가능)

☑ 교육급여 신청권자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, 카드사 거절 등의 지급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류제출, 재신청 등 후속조치에 따라 바우처 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6

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한은?

☞ 교육급여 바우처는 최대 12개월간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. 전년보다 바우처 사용기간보다 5개월 사용기간이 단축되었으니 기간에 유의하여 전액 소진해주시기 바랍니다.

☑ '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'26. 3. 31.(화)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다만,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.

- ☞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.
- ☞ 유흥·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, 상품권·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상점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며, 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.

〈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제한 업종 기준 〉

구분		사용제한 업종
유흥 업종	일반 유흥주점	룸살롱, 단란주점, 맥주홀, 각테일바, 요정, 주류판매점 등
	무도 유흥주점	무도 유흥주점, 카바레, 나이트클럽, 극장식 주점 등
위생업종		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 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
레저업종*		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PC방
사행업종		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기타업종		성인용품점, 총포류판매, 부동산 관련업, 음식점, 산후조리원 등

❖ 카드사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

- －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,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, 가맹 계약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인해 카드사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 2025학년도 바우처 지급수단 관련: 8 ~ 13번 >

8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수단은?

- ☞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바우처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.
- ☑ 만14세 이상 학생은 본인 스스로 카드사, 은행 등을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한 다음, 직접 신청으로 바우처 배정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☞ 바우처 신청인께서 신용·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는 간편결제(페이코) 또는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를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9 신용·체크카드로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?

- ☞ 교육급여 바우처 서비스는 BC, KB국민, NH농협, 롯데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 등 9개 시중 카드사와 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·체크카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

신청인 명의의 신용·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고자 하시는 경우 신청시 해당 카드사를 정확히 선택하시면 됩니다.

(신용·체크) 선택가능 카드사	[]KB국민 []NH농협 []롯데 []삼성 []신한 []우리 []하나 []현대	
	* 은행 연계 카드의 경우 아래 금융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	
	BC 제휴	[]IBK기업은행 []새마을금고 []수협은행 []우체국 []신협 []부산은행 []광주은행 []제주은행
	KB국민 제휴	[]전북은행

* 상기 표에 없는 금융기관(BC제휴 대구은행, BC제휴 경남은행 등)은 참여기관이 아닙니다.

간편결제로 바우처를 신청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 간편결제는 실물카드 없이 앱결제만 가능한가요?

☞ 2024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간편결제(교육급여바우처 간편결제 운영사: NHN페이코)가 추가 도입되었습니다.

☞ (신청방법) 바우처 신청 단계에서, ❶ 지급수단을 간편결제로 선택, ❷ 페이코(PAYCO) 회원가입 여부 확인*(페이코 로그인 페이지로 연동), ❸ 페이코 회원등록(휴대폰 본인인증을 필수로 진행) 후, ❹ 바우처 신청을 완료하면, ❺ 신청인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완료된 페이코 회원 ID로 바우처 포인트가 부여됩니다.

* 이미 기존에 페이코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, 바로 바우처 신청 진행 가능

☞ (사용방법) 바우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페이코 온/오프라인 가맹점 (약 40만개, 교육급여 바우처 제한업종 제외)에서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앱/PC 등으로 결제 가능하며, 신청인이 별도로 페이코를 통해 실물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면 KB국민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(실물카드 발급 희망 시 페이코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 필수)

< 실물카드 없이 간편결제로 포인트 사용(기본 제공 방식) > * PAYCO 앱 설치

- 온라인 결제(페이코 가맹점): 결제수단을 페이코로 선택 >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 선택 > 온라인 결제 진행(페이코 앱 실행 또는 로그인)
- 오프라인 결제(페이코 가맹점): 휴대폰에서 페이코 앱 실행 >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 선택 > 바코드 또는 NFC 결제

< 실물카드로 포인트 사용(별도 신청 필수) >

- 실물카드 결제(KB국민카드 가맹점):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가 부여된 선불카드 형태의 실물카드로, 온/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

*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 잔액 내에서, 페이코 간편결제 방식(앱결제)과 실물카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 가능(실물카드 분실 후 재발급 시, 카드사 정책에 따라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)

11 전용카드로 바우처를 신청하면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?

- ➡ 2024학년도부터 기존 무기명 선불카드가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로 개편되었습니다.
- ➡ (신청방법) 바우처 신청 단계에서, ❶ 지급수단을 전용카드로 선택, ❷ 신한카드에서 전용카드 신청 진행*(신한 선불카드 신청하기 페이지로 연동), ❸ 바우처 신청을 완료하면, ❹ 신한카드에서 카드 신청정보 확인 후 신청인이 입력한 배송지로 카드 인편 배송, ❺ 본인 카드 수령 후 바우처 포인트가 부여됩니다.(카드 신청 후 약 10일 내외 소요 가능)
- ➡ (사용방법) 바우처 포인트는 신한카드 온/오프라인 가맹점(교육급여 바우처 제한업종 제외)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12 2024학년도에 간편결제와 전용카드로 바우처를 지원받으면 2025학년도부터 매년 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
- ➡ 신용·체크카드, 간편결제의 경우 신청인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 받은 해당 카드사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, 간편결제사로 지급받은 경우는 회원가입이 계속 유지되어 있다면, 기존 지급수단으로 바우처 자동신청이 지원됩니다.
- 반면, 전용카드의 경우 25학년도에는 자동신청 지원이 불가능하며, 추후 26학년도부터는 자동신청이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.

13

시설에서 보호(거주) 중인 교육급여 수급학생의 경우 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

☞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이상의 수급학생 본인, 복지수급정보상 교육급여신청인, 주민등록상 수급학생의 세대주/성인세대원이 신청 가능합니다.

☞ 시설 거주 학생의 경우, 만 14세 이상 학생은 본인이 바우처 직접 신청(체크카드 발급 가능)을 권장 드립니다.

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, 시설 대표자(시설장)가 수급학생의 보호자(교육급여신청인,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) 자격으로 대리 신청 가능하며, 시설 대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간편결제 또는 전용카드로만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.(신용·체크카드로 바우처 신청 불가)

* 시설에서 수급자(학생)의 주민등록 정보상 '세대주' 또는 '성인 세대원'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, 시설대표자(시설장)만 신청 가능(신청 후,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필수 제출)

< 2025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관련 질문: 14~ 18번 >

14

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받았는데, 2025학년도 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?

☞ 2024학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·체크카드, 간편결제로 지원받은 경우, 20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격 유지 시, 기존 신청정보(신청인, 지급수단, 카드사 등)와 동일하게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가 자동 신청될 예정입니다.

☞ 2024학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원받은 경우,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본 신청기간(2025.4.1.~2026.2.28.)에 바우처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(선불카드는 계속사용 및 자동신청 지원 불가)

【 참고. 2025학년도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자동신청 예시 】

'24학년도 신청정보 (신청번호 J2024XXXXXXX)	[자동신청 원장 생성]	'25학년도 신청정보[자동신청] (신청번호 J2025XXXXXXX)
신청인(카드 명의자) 홍길동 + 지급수단 (신용·체크, 간편결제) + 지급기관(9개 카드사, 간편결제사) 농협카드	----- 동일 신청인 -----> "홍길동" ----- 지급기관 -----> "(변경 신청) 삼성카드"	신청인(카드 명의자) 홍길동 + 지급수단 (신용·체크, 간편결제) + 지급기관(9개 카드사, 간편결제사) 삼성카드
지원대상자(학생1) 홍사랑 + 지원대상자(학생2) 홍우정	----- 대상자 식별 -----> '24학년도 지원 대상자 2명 중 교육청 지급의뢰 정보상 "학생1(홍사랑)"만 지원대상자(계속수급자)로 확인	지원대상자(학생1) 홍사랑 + (학생2 자동신청 제외)
신청인 홍길동 명의의 농협카드로 자녀 2명(홍사랑, 홍우정)의 '24학년도 바우처 배정 완료		신청인 홍길동 명의의 삼성카드로 자녀 1명(홍사랑)의 '25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

❶ 직전 학년도 신용·체크, 간편결제 배정 완료자 대상, 기존 바우처 신청정보(신청인, 지급수단, 지급기관, 지원대상자*)와 동일한 정보로 당해 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처리

* (지원대상자 변경 시) 자격검증일 기준, 당해 학년도 교육급여 계속 수급자로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만 자동신청되며, 신규 수급학생의 경우 기존 바우처 신청정보가 없으므로 본 신청기간에 신규 신청 필수

❷ 자동신청 완료 이후, 신청권자 자격 및 지급기관 심사* 결과에 따라 바우처 배정

* 자격검증일 기준, 신청권자 여부(만 14세이상 수급자 본인, 교육급여 신청인,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) 및 지급기관(카드사, 간편결제사) 심사(유효카드 보유 여부 등)

❖ 자동신청 제외 대상

- 자격검증일 기준, '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격(교육청 제공)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
- '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(본 신청기간에 신규 신청 필요)
- (본신청 개시 전) 자동신청 거절 및 지급수단 변경 신청기간('25.3.5.~3.20.) 내 거절 접수 완료한 경우
- (본신청 개시 후) 자동신청 처리 전, 신청인이 직접 '25학년도 바우처 본신청을 완료한 경우

❖ 자동신청 후 바우처 지급 거절 사유(예시)

- 자격검증일 기준, '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인(카드 명의자)이 신청권자 자격(교육급여 신청인,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)을 상실했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
- 자격검증일 기준, '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가 지급된 카드사(및 간편결제사)의 카드 미보유자(유효기간 만료, 회원탈회, 사용정지 등)등 카드사(및 간편결제사)로부터 지급 거절되는 경우
- 자격검증일 기준, 신청인 또는 수급자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변경 등)가 변경된 경우
- 외국인 등 주민등록 전산정보 조회 불가자(증빙서류 추가제출 대상)

'25. 3월 초에 자동신청 및 자동신청 거절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. 자동신청 거절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, 어떻게 접수하는 건가요?

☞ 2024학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·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로 지원받은 경우, 20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격 유지 시, 기존 신청정보(신청인, 지급수단, 카드사 등)와 동일하게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가 자동신청될 예정입니다.

☞ 자동신청 거절이란, 직전 학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았던 지급수단으로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고, 바우처 신청정보(카드사/지급수단/신청인 등)의 변경을 희망(아래 예시 참고)하여, 기존 카드로의 자동신청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.

☑ 자동신청 거절 대상:

'25. 2. 28.까지 '24학년도 바우처 지급 완료자(신용체크 또는 간편결제사 배정 완료일 기준) 중 자동신청 미희망자('24학년도 바우처 신청자 본인만 거절 접수 가능)

☑ 자동신청 거절 방법: 교육급여바우처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에서 본인인증 후 자동신청 거절 접수

☑ 바우처 지급수단 또는 신청정보 변경 희망 시(예시 참고) 처리 방법

<예시1: '24학년도 [농협카드] → '25학년도 [BC카드]로 변경 희망 시>

- ❶ 바우처 신청자가 1개의 카드로 한 명 이상의 바우처를 수령하였을 시, 타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로 변경 처리 가능
- ❷ 바우처 신청자가 여러 개의 카드로 두 명 이상의 바우처를 수령하였을 시, 타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로 통합하여 변경 처리는 가능하며, 여러 개의 카드사로 나누어 바우처 변경 신청은 불가

<예시2: 신용·체크카드가 아닌 타 지급수단(간편결제, 선불카드)으로 변경 희망 시>

- ❶ 바우처 신청자가 신청번호가 2개 이상이며 각각 신용·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바우처를 수령하였을 시, 일괄 신용·체크카드 또는 일괄 간편결제로는 통합하여 수령 가능
- ❷ 바우처 신청자가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수령하였을 시,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본신청 필요

〈예시3: 신청인(카드 명의자) 변경 희망〉

☞ 자동 신청 거절기간에 기존 신청인이 자동 충전 거절 처리하고, 변경을 희망하는 신청인이 본 신청 기간에 신규 신청 필요

☞ 기간 내('25.3.5.~20.) 자동신청 거절 또는 지급수단사 변경하지 않은 경우, '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가 기존 지급수단으로 자동신청되며, 바우처 배정완료 후에는 신청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
☞ 기간 내('25.3.5.~20.) 자동신청 거절 접수한 경우, 반드시 신청권자가 직접 '25학년도 본 신청 기간('25.4.1.~'26.2.28.)에 바우처를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☑ '24학년도 바우처를 '25.3.1. 이후에 지급(카드사 또는 간편결제사 배정)받은 경우, 별도의 자동신청 거절 절차 없이 '24학년도 바우처 배정완료 시 동일한 지급수단으로 '25.4.1.부터 '25학년도 바우처가 자동신청됩니다.(단, 자동신청 처리 전, '25학년도 바우처 본신청을 직접 완료한 경우 본신청 정보로 처리됨)

16

2024학년도에 신용 · 체크카드로 바우처를 지원받았습니다. 자동신청된다고 하는데, 2025학년도 바우처는 다른 카드사로 받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☞ 2024학년 카드사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 신청 카드사 변경 접수 하셔야 합니다.

– 자동신청 거절 또는 카드사 변경 기간: '25. 3. 5.(수) ~ 3. 20.(목)까지
(매일 09:00 ~22:00)

– 대상: '24학년도 바우처(신용 · 체크카드) 기 지급자('24.4.1. ~ '25. 2.28. 카드사 배정 완료자) 중 자동신청 카드 변경 희망자

17

2024학년도에 학생의 ‘부(아버지)’가 바우처를 신용·체크카드로 신청하여 지원받았습니다. 자동신청된다고 하는데, 2025학년도에는 학생의 모(어머니)카드로 신청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나요?

- ☞ 2024학년도에 신용·체크카드로 바우처를 지원받으셨다면,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신청인(카드 명의자)에게 바우처가 자동 신청됩니다.
 - ☞ 만약, 2025학년도 바우처 신청인(카드 명의자)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신청 거절 접수 후, 본 신청기간('25.4.1.~'26.2.28.)에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인께서 바우처를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.
 - ☞ 단,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(만 14세 이상의 수급학생 본인, 교육급여 신청인,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)여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자동신청 거절 기간: '25. 3. 5.(수) ~ 3. 20.(목)까지(매일 09:00 ~22:00)

18

'25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이 완료되면, 바우처 배정은 언제 되나요?

- ☞ ('25. 2. 28.까지 '24학년도 바우처 지급 완료자) '25학년도 교육급여 대상 확정(교육청 제공, 3.16.~3.23.) 이후, 자격검증을 거쳐 3월 말 ~ 4월 초 경 카드사로부터 포인트가 일괄 배정될 예정입니다.
 - ☞ ('25. 3. 1.이후 '24학년도 바우처 지급 완료자) '25학년도 본신청 개시 후 '25. 4. 1.부터, 신청인의 '24학년도 바우처 배정시기에 따라 자동신청 및 배정이 상시 처리될 예정입니다.(자동신청 및 배정 결과 문자 안내 예정)
- 신청인의 '24학년도 바우처 지급완료(상시, 문자 안내) + '25학년도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(교육청 제공) → '25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처리(상시, 문자 안내) → 자격검증 및 카드사 바우처 배정 완료(자동신청 처리 후 2~5영업일 소요, 심사 및 배정결과 문자 안내)
- '24학년도 바우처 배정 완료 시 '25학년도 교육급여 대상자로 확인되어야 자동신청 처리되며, 만약, 자동신청 처리 전 본인이 직접 '25학년도 바우처 본신청을 완료한 경우 본신청 정보로 처리됨.

참고

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운영(안)

- (운영 기준) 신용·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를 기본 지급수단으로 운영하고, 예외적 지급수단으로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 운영

※ 저신용, 카드사 거절 등의 사유로 카드 바우처(신용·체크카드) 지급이 곤란한 경우 간편결제 수단으로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며, 기타 예외적 수단으로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 발급 운영

- (신용·체크카드) 신청인이 보유한 본인 명의 신용·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(※ 다음 학년도 자동신청 지원)

카드 바우처(시중 9개 카드사 전체)	
	농협, 롯데, 삼성, 신한, 하나, 우리, 현대, KB국민, 비씨 ☑ [BC카드 제휴은행] IBK기업은행, 광주은행, 부산은행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한, 우체국, 제주은행 ☑ [KB국민카드 제휴은행] 전북은행
☞ 신청인이 보유한 본인 명의의 카드사의 신용·체크카드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 ※ 해당 학년도에 한번 선택·신청완료한 카드사는 변경하거나 중복 선택·신청 불가	

- (간편결제) 신청인 본인 명의로 교육급여 바우처 간편결제 수단을 발급 하여 포인트 지급

- 저신용 등 신용카드 발급 제한자도 바우처 지원 가능

※ 교육급여 바우처 간편결제 운영사(NHN페이코) '기명 회원' 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

※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지급수단으로 발급(개인 계좌 등 연결 및 충전 불가)

※ '24학년도 바우처 대상 신규 도입('23학년도 바우처는 신청 불가)

간편결제(PAYCO 페이코)	
 PAYCO APP	 PAYCO 포인트 카드
페이코(PAYCO) 간편결제 수단(앱/웹, 실물카드) ☑ 페이코 기명회원 대상 바우처 신청 및 발급 가능 ☑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 앱·웹결제로 온·오프라인 사용 가능 ☑ 실물카드 발급 희망 시 페이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·발급 가능	
[간편결제(앱/웹)] 자동 발급	[실물카드] 별도 신청 필요
☞ 신청인 본인인증을 완료한 페이코 아이디(기명회원)로 바우처 발급 및 포인트 지급 ※ 페이코 비회원 또는 무기명 회원은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(신청인 본인 명의 휴대폰)을 통해 '기명회원'으로 등록 후 바우처 신청 진행 가능 ※ 해당 학년도에 중복하여 선택·신청 가능(예: 4월에 자녀A 신청 후, 5월에 자녀B 추가 신청 가능)	

- (예외적 전용카드 발급) 저신용, 카드사 거절 등의 사유*로 신용·체크카드를 통해 바우처 배정이 곤란한 경우, 기명식 선불카드(신한카드) 형태의 ‘전용카드’ 제공하여 바우처 지원

* 신용카드 발급 제한자의 경우 간편결제 수단으로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나, 그 밖의 사유로 간편결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카드 신청 가능

- (전용카드) 신청인 본인 명의로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를 제공하여 바우처 지급

- 저신용 등 신용카드 발급 제한자도 바우처 지원 가능

※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카드 운영사(신한카드)를 통해 카드 신청 필요

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)	
< 전용카드 발급 예시 > 	기명식·충전형 선불카드(운영사: 신한카드) ☑ 온라인·오프라인 가맹점 사용 가능 ☑ 카드 1장당 500만 원까지 충전 가능(근거: 여신금융업법) ☑ 카드 유효기간 명시(계속사용 불가) ☑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전용카드 신청시 등록된 '카드 수령지' 주소로 배송(인편 전달)되며 본인수령 확인 후 사용 가능
신청인 본인 명의의 '기명식 선불카드'를 발급하여 포인트 충전 ※ '기명식 선불카드'란 소지자가 정해진 카드로써, 카드사(신한카드) 홈페이지에서 직접 '본인인증'을 통해 '교육급여 바우처 전용카드' 신청 진행(카드수령지 입력 등) 필수 ※ 유효기간이 정해진 카드로 다음 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(계속사용) 불가(매년 신규신청 필요)	